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 법령에서 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토록 하고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안제2조
- 계약심의대상 (30억이상 공사, 5억이상 구매 용역, 기타)....안제 4조
※ 법제32조제1항. 령제108조제1항제2호.
-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3천만원이하 10억원이하).....안제11조
-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및 여비...안제12조

검토의견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제2조내지 안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조항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한 안 제11조에 있어서는 영 제66조 제2항에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안은 상한금액이 서울시 조례안과 같이 10억원이나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는 30억원이고, 경북 안동시의 경우는 1억원이며, 경남 김해시와 마산시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민생활 관련공사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 또는 감리자가 전담하여 왔으나 시공과정에 잦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시공과정에 참여토록 하되 형식적인 참여가 되지 않도록 안 제11조 본문의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는 규정은 발주부서장의 자의에 의하여 주민 감독을 배제시킬 수도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각호의 감독 대상공사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건설, 그린파킹공사 등 교통·주차시설공사와 하절기 침수에 대비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6. 22

보고자 : 김 찬 재

- #붙임: 1. 수정의견.
2. 관련법규.

수 정 의 건

조 례 안	수 정 의 건
<p>제11조</p> <p>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연간단가계약 제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 한다</p>	<p>제11조</p> <p>.....</p> <p>.....</p> <p>.....</p> <p>.....대상</p> <p>으로 한다.(뒷부분 삭제)</p>
<p>제11조 각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 설치 공사 2. 보안등 공사 3. 보도블록 설치 공사 4.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5.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건축물 증·개축공사 6. 공중화장실 공사 7. 공원녹지관련 공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p>제11조 각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공사 2. 보안등 공사 3. 보도블록 설치공사 4.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5.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건축물 증·개축공사 6. 공중화장실 공사 7. 공원녹지관련 공사 8. 교통주차시설 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工事)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